

## 제 12 장 지적재산권

### 제 12.1 조 정 의

이 장의 목적상,

**특허협력조약**이란 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 의하여 운영되는 특허협력조약을 말한다.

**인도공화국 특허·디자인·상표 관리청**이란 인도의 특허·디자인·상표 관리청을 말한다. 그리고

**특허청**이란 대한민국의 특허청을 말한다.

### 제 12.2 조 일반적 의무

각 당사국은 *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*상의 자국의 권리 및 의무를 재확인하고, 그 협정에 따라 자국 영역 내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(자연인 또는 법인)에게 지적재산권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한다.

### 제 12.3 조 강화된 보호

각 당사국은 자국 법률에서 *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*상 부여되는 것보다 더 강화된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규정할 수 있다. 다만, 이 협정과 불합치해서는 아니 된다.

### 제 12.4 조 집 행

양 당사국은 지적재산권의 집행에 관하여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

정에 합치하게 자국 법률에 규정한다.

## 제 12.5 조

### 지적재산 분야에서의 협력

1. 양 당사국은 사회·경제 및 문화 발전의 요소로서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을 인정하고, 지적재산 분야에서 양 당사국 간의 협력을 증진하도록 노력한다.

2. 양 당사국은 특히 다음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다.

가. 상대국의 지적재산정책 및 경험에 대한 이해 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하는 지적재산 분야에서의 교육·워크숍 및 박람회 등

나. 특허협력조약상의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, 그리고 국제특허절차의 간소화

다. 선행기술조사 결과의 상호 교환·조사 결과의 비교 및 조사 결과의 차이점에 대한 검토를 포함한 선행기술 공동조사

라. 지적재산의 라이선싱 및 지적재산 보호를 위한 시장정보

마. 식물신품종 보호

바. 심사관을 포함한 인적 교류, 그리고

사. 지적재산에 관한 정보시스템

3. 양 당사국은 상호 합의에 따라 별도의 약정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특허청과 인도공화국 특허·디자인·상표 관리청간 지적재산에 관한 협력을 증진할 수 있다.

## 제 12.6 조

### 분쟁해결조항의 비적용

제14장(분쟁해결)은 이 장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이나 분쟁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.